

2021년도 제2차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재공고

산업기술R&D연구기획사업의 2021년도 제2차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同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기업)에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2021년 11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 1-1. 사업목적
 - 1-2. 지원대상분야
 -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추진체계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 4-1. 지원분야
 - 4-2. 신청자격(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4-3. 지원제외 처리기준
 -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 5-1. 평가절차
 -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주력산업 고도화,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산업부 핵심정책 및 정부 R&D 투자방향에 적합한 신규 R&D 사업의 사전 기획연구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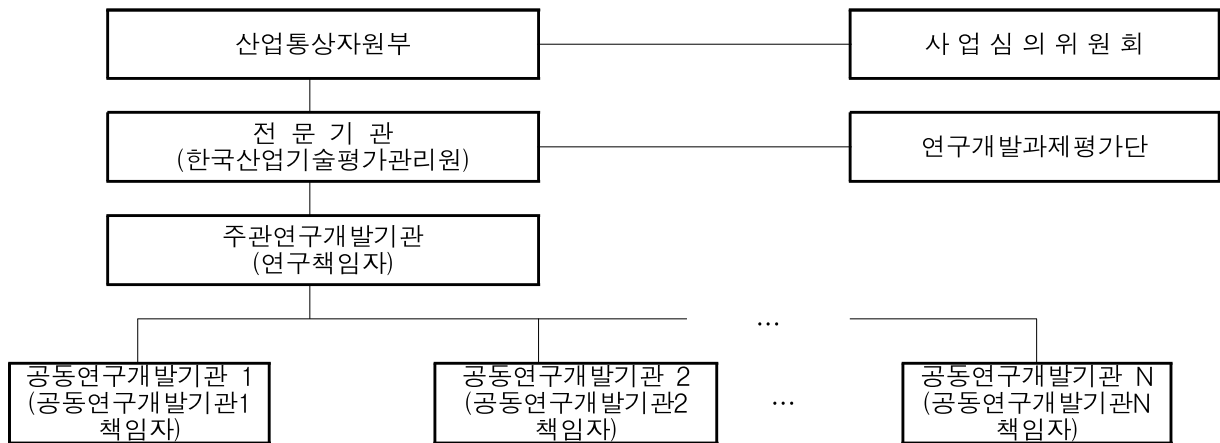
1-2. 지원대상분야

- 산업기술분야 신규 R&D 사업기획
 - 비예타기획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00억원 미만의 중소규모 R&D 사업기획

1-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구분 | 내용 |
|-----------------|----------|
| 공고예산 | 0.6억원 |
| 대상과제 | 비예타기획 2개 |
| 지원규모(정부지원연구개발비) | 0.6억원 이내 |
| 지원기간 | 6개월 이내 |

2. 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기업 포함)
- “연구책임자”라 함은 해당 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책임자
- 과제참여자(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등)는 해당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자

3.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조건

① 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해당연도 연구개발비의 100%까지 정부지원연구개발비(무담보·무보증·무이자) 지원 가능
- 연구개발기관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를 매칭 부담하나, 민간현금 의무 비율은 없으며, 예산 소요 규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자율적으로 산정 가능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동 사업은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전기획 또는 기획연구에 해당하여 기술료를 비징수함

3-3. 연구개발비 산정시 유의사항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다음 기준에 따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원래 계획보다 감액할 경우 해당금액을 반납하여야 하며, 당초 계획대로 신규인력을 채용하지 못하여 집행하지 않은 금액은 과제종료 후 정산시 반납하여야 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상기에 의거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 인건비 금액만큼 기존인력 인건비를 협약시에 한하여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단, 신규채용 인건비를 전부 또는 일부 미집행한 경우, 기존인력 인건비 집행액 중에 신규채용 인건비의 실제 집행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불인정함
- 창업초기 중소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기존인력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음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 제1호의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의 구체적 산정기준>

- ◇ 과제의 전체 연구내용이 지식서비스, 소프트웨어 및 설계기술 등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 계획서 표지에 해당 기술분류 코드번호를 기입하고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가능
 - RFP내용이 사전조사, 기획, 평가연구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서비스>>연구개발/엔지니어링 서비스의 기술분류로 분류하고,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
- ◇ 또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하나만 지식서비스, S/W 및 설계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해당 중소·중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산정가능
 - 예를 들어,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 차체 및 경량화 기술에 속하고,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은 자동차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인 경우에,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내용만 인건비 현금 인정 분야에 속함. 따라서, 중소·중견기업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은 해당 코드번호(100212, 자동차/철도차량 관련 IT·SW)를 연구개발계획서 표지에 기입하고,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 단, 인건비 현금 인정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 현금으로 산정할 수 없음
- ◇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별표1]을 참조하고,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코드번호는 공통 운영요령 [별표1]을 참조

- 기술력 제고를 위해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또는 대학의 직제규정에 있는 연구소만 해당)에 파견되어 과제에 참여하는 중소기업 소속 참여연구자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된 기업(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시작시 연구개발서비스신고증을 제출한 경우) 소속 연구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 육아부담으로 시간선택제(통상 근무시간보다 짧은 시간으로 주당 15~35시간 범위에서 정한 시간을 근무하는 것)로 근무하는 중소·중견기업 소속 여성연구원의 인건비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소속 참여연구자가 해당분야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할 경우 그 기업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 산업위기지역에 소재한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50% 이내로 해당기업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 따른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참여연구자 출산전후 휴가기간 인건비 지급 허용

- 참여연구자의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도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원에 대하여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급여(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액수는 제외)는 인건비로 계상·집행 가능

□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지원전문가 지원제도

- 중소·중견기업에서 과제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연구지원전문가 교육을 수료할 경우(단, 연구지원전문가 교육 이수 시점부터 인건비 지급 가능), 1명에 한해 연구개발비 중 간접비에서 해당 인력의 인건비를 현금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채용한 경우에 인정됨
 - 기존인력은 해당인력 인건비의 50%까지 현금으로 산정 가능(타 과제 포함 참여율이 50%를 초과할 수 없음)

□ 참여연구자 중 박사후연구원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정산 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비영리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산정한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①항 40의2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연구개발비중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는 원칙적으로 계상하지 않음

4. 지원분야 및 신청자격 등

4-1. 지원분야

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목록

| 번호 | 분야 | 연구개발과제명 | 개발기간 | 정부출연금 (백만원) | 과제 유형 |
|-----|----------------|------------------------|------|----------------|-----------|
| 1 | 비지정 (프로그램형) | 개념설계형(탐색형)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 6개월 | 30 | 비에타 기획 |
| 2 | 비지정 (프로그램형) | 포상형·후불형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 6개월 | 30 | 비에타 기획 |
| 합 계 | | | | 60 | - |

- 연구개발과제별 세부 내용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에 별도 첨부된 과제 제안요구서(RFP) 참조
- 연구개발과제별로 신청 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 범위는 RFP에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수행기간은 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조정 가능

4-2. 신청자격(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산업기술혁신사업 공동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9의2부터 9의4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는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함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사업 참여 가능함

4-3. 지원제의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연구개발기관(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제외),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신규평가 결과 지원대상이더라도 협약 시 아래 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지원제외 처리함)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함)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

-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총괄연구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자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연구책임자(세부주관책임자 포함)로써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개발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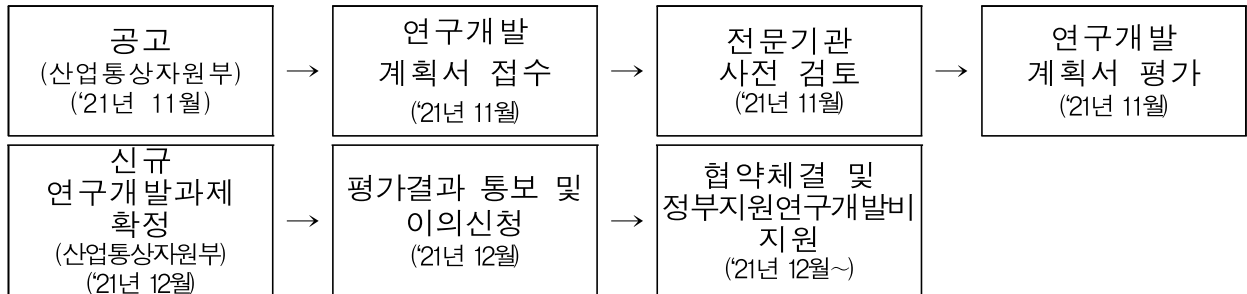
4-4. 연구개발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 정부에 의한 기 지원·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소관사업 기 지원과제 자료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 알림·정보 > 정보검색(기술분야, 키워드, 보고서 검색)
 -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사업과제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한 : 2021. 11. 19(금) ~ 2021. 11. 25(목), 7일간
- 제 기 처 : (35262)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탄방동 647)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정책기획팀(☎ 1544-6633, 042-712-9307)
- 제기방법 : 중복성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5. 평가절차 및 평가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문기관은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부합성 등을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연구개발계획서로만 평가)를 실시하여 연구개발계획서 평가(본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할 수 있음
- 이의신청 :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 평가항목

| 평가항목 | 세부 항목 |
|--------------------------|---|
| 과제에 대한 이해 및 사전조사·분석(15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제에 대한 이해도(RFP 내용과의 부합성 등)(10) ▪ 최신 동향분석 등 사전조사 및 분석의 충실성(5) |
| 연구내용 및 추진전략(55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수행 절차 등 추진계획의 적절성(10) ▪ 조사분석 방법론, 전문가 활용 등 연구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15) ▪ 연구수행 추진체계의 적절성(10) ▪ 연구내용 구성 및 세부목표의 구체성 및 타당성(10) ▪ 연구개발비 편성의 적절성(10) |
| 연구수행능력(3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기획·관리능력(15) ▪ 연구팀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15) |

- 과제에의 평가점수는 연구개발과제평가위원별 점수 중 각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하여 계산한 후, 가점 및 감점을 반영
-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 가능 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 과제가 경합일 경우에는 종합 평점이 70점 이상인 과제 중 최고 점수 받은 과제가 선정됨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 ① 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 ② 참여연구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2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상생협력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동반성장위원회가 발표하는 동반성장지수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
 - ③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성과공유제 참여한 위탁기업으로 성과공유제확산추진본부로부터 ‘성과공유 과제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유효기간 내에 한함)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 신청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 ①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기술실시 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
 -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인 경우
 -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을 받은 기업”이 연구개발기관으로 과제를 신청할 경우(2점)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8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고시한 ‘국가혁신융복합단지’에 입주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중소·중견기업이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종료된 과제에 참여한 학생연구원 (박사후과정 포함)을 채용하여 2년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수요기업으로 과제에 참여하여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 또는 기술을 구매하거나 실시권을 부여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수요기업으로 신청한 경우(구매·실시 등에 대한 계약서로 증빙)(2점)
- 수요기업이 신청 과제에 참여하는 다른 참여기업(공급기업)에 해당 과제의 연구개발 기술과 관련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수요기업 협약서로 확인)(2점)
-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점)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개발기관이 신청한 경우(3점)
-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에 상습적으로 위반한 기업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할 때, 그러한 위반 사실이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통보 등을 통하여 확인될 경우(2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구분 | 내용 |
|----------------|---|
| 공고기간 | ○ 2021. 11. 19(금) ~ 2021. 11. 25(목), 7일간 |
| 신청서 및 관련 양식 교부 | ○ 양식교부 : 2021. 11. 19(금) ~ 2021. 11. 25(목), 7일간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R&D 정보포털사이트(itech.keit.re.kr) |
| 신청서 접수처 |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
| 접수기간 | ○ 접수기간 : 2021. 11. 19(금) ~ 2021. 11. 25(목), 7일간 ○ 접수마감 : 2021. 11. 25(목)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 신청서 제출 온라인 접수시 유의사항

- 오프라인 서류제출은 불필요하며, 산업기술 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온라인으로 관련 서류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시 연구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18시까지 모든 연구개발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된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 등 해당 인증기관(서울 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가 진행되지 않음을 유의 요망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 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 접수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하고 온라인 제출이 원칙 (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3:59 까지 제출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나,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시스템이 폐쇄되므로 그 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8. 제출 서류

□ 제출서류 목록

| 서류명 | 부수 | 제출기관 | 비고 |
|---|-----|----------------------------|--|
|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연구개발계획서 |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온라인 업로드(hwp) - 기본정보에 대한 온라인 전산 입력이 완료되어야 함 |
| 사업자등록증 | 각1부 | 영리기관(연구개발 기관+공동연구개발 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기업 제출(비영리는 면제) |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각1부 | 연구개발기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기업)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날장 제출 가능 |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및 청렴서약서 | 1부 | 연구개발기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각1부 | 연구개발기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1부 | 연구개발기관+공동 연구개발기관 모두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1부 | 영리기관(연구개발 기관+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 온라인 업로드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 비영리와 상장사(거래소·코스닥) 미제출, 그 외 기업은 제출(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 자료) |
| 외부 참여연구자 기관장 확인서 | 1부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대표로 제출 |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 과제 참여자 :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신청시 유의사항

- “기술료 비징수” 연구개발과제는 수행 결과에 대해서는 공개하여야 함
-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최대범위는 과제제안요구서(RFP)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신규평가지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연구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불인정 함
- 기타 세부내용은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연구개발계획서에 따라 공동연구개발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개발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연구개발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연구개발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연구개발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외국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과제 중 해외기관이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문기관이 협약 전 「대외무역법」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

-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상세내용 및 관련양식은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신청서류 온라인 접수문의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R&D상담콜센터(☎ 1544-6633)
- 공고 일반사항 문의 : 정책기획팀(☎ 042-712-9307)
- 상세 사업, 과제제안요구서(RFP), 신규평가 일정/절차 : 하단의 과제별 RFP 및 평가관련 문의처 참조

< 과제별 RFP 및 평가관련 문의처 >

| 번호 | 과제명 | 과제제안요구서(RFP) | | 신규평가 일정/절차 등 | |
|----------|------------------------|--------------|--------------|--------------|--------------------------------------|
| | | 담당PD(팀) | 연락처 | 담당부서 | 연락처 |
| 1 | 개념설계형(탐색형)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 정책기획팀 | 042-712-9304 | 정책기획팀 | 042-712-9304 |
| 2 | 포상형·후불형 연구개발사업 기획연구 | 융합신산업팀 | 053-718-8337 | 융합신산업팀 | 053-718-8337 |
| 공고 문의 | 공고 일반 사항 | - | - | 정책기획팀 | 042-712-9307 yudonghun@keit.re.kr |